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08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김재원·김준형・박정현

신장식 • 백선희 • 강경숙

김선민 • 이해민 • 정혜경

박은정 · 서왕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지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등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도시의 정의, 스포츠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2항제4호의2, 제6조의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포츠도시"란 사회환경·자연환경 및 체육 관련 인적자원 등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스포츠도시 육성 및 지역스포츠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스포츠도시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스포츠도시를 지정하고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스포츠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츠도 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 2. 스포츠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 4. 그 밖에 스포츠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3(스포츠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스포 츠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스포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스포츠 시설, 스포츠 참여기반, 스포츠 관련 행사 개최 능력등 스포츠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도시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스포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 2. 스포츠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 3.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4. 스포츠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스포츠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스포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스포츠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4(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포츠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포츠도시로 지정된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스포츠도시 조 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4. 지정된 스포츠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 그 밖에 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 제10조의5(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도시의 육성·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중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0조의4에 따라 스포츠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2.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22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스포츠도시"란 사회환경ㆍ
	자연환경 및 체육 관련 인적
	자원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
	한 스포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참여 활성화
	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10조의3에 따라 지
	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스포츠도시 육성 및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조의2(스포츠도시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

<신 설>

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스 포츠도시를 지정하고 스포츠도 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2(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설치) ① 스포츠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 2. 스포츠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 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 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 4. 그 밖에 스포츠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10조의3(스포츠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스포츠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분야별로 스포츠도
 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스포
 츠 시설, 스포츠 참여기반, 스
 포츠 관련 행사 개최 능력 등
 스포츠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
 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스포츠도시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③ 스포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

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도시 조성의 기본 방 <u>향</u>
- 2. 스포츠도시 지정 분야별 특 성화 계획
- 3.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다 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 발에 관한 사항
- 4. 스포츠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스포츠도시 조성사 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 후단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 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 치단체를 스포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 항에 따른 스포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 다.
- ①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스포츠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기간 연장, 스포츠도시의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포츠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신 설></u>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스포츠도시로 지정된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스포츠도 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포츠 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 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4. 지정된 스포츠도시가 지역여 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스 포츠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 기 곤란한 경우
- ② 그 밖에 스포츠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스포츠산업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
츠도시의 육성·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
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관
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산업진흥협의

<u><신 설></u>

제2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별시장</u>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
흥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문)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여</u>
,
1. 제10조의4에 따라 스포츠도
시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
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
<u> </u>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
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u>시 · 도지사</u> -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